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금용도에 청사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부대경비를 신설토록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 용도에 청사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부대경비 신설

3. 의견제출

○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서울 중구청), 문의전화 : 3396-5012, FAX: 3396-8670, 전자우편 : gigusarang@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부대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생 략) 1.~2. (생 략) <u>3. <신 설></u>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u>3.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부대경비</u>